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가. 개정 이유

-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*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

* 국내 농림축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서 정한 대상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고율 관세

나. 개정 내용

- 현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계속 부과
-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조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쌀 관세화·한-중 FTA 발효 등에 따른 저가 쌀의 수입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농가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